

# DIABLO 수도 지역

## 규정 제7호

### 수도 서비스 조건

#### 제1조. 지역 규정이 적용되는 서비스

수도 서비스는 지역 위원회가 적용 또는 수정하는 지역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에서 공급해야 한다. 각 신청인 또는 고객은 지역으로부터 수도 서비스를 신청 또는 제공받음으로써 당시 시행되는 모든 지역 규정에 귀속되고 준수할 것을 약속 및 동의한다.

#### 제2조. 신규 서비스

신규 수도 서비스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역 수도 배급 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다:

- (a) 제공할 지대는 지역의 관할 구역에 포함된다.
- (b) 지역에서 저수지, 루프식 주관 및 펌프를 포함한 수도 처리, 저장 및 배급 시설이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적절하게 해당 지역에 영구적으로 수도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구조, 위치와 용량을 갖추고 있다고 단독적으로, 그리고 확정적으로 판단한다. 지역은 기존 시설의 충족 적도를 판단하기 위해 시설을 통해 제공받을 모든 지대의 향후 수도 요건, 소방에 필요한 유량,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가 지역 내

기존 고객에게 끼칠 영향을 포함해 관련 있다고 생각되는 사실 또는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c) 적절한 용량 및 압력을 갖춘 지역 수도 주관이 공공 도로 또는 제공할 지대 근처에 위치하며 지역의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권에 있다.

(d) 고객은 규정 제3호에 따라 수도 서비스를 신청하고 연결 요금을 지불한다. 신규 서비스 신청은 다음을 포함해 지역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며 국장이 승인하는 정보로 뒷받침된다:

- 1) 제공할 건물의 지도 또는 법적 설명서
  - 2) 서비스가 시작될 영업일
  - 3) 신청인 및/또는 동반 신청인의 청구 성명과 우편 주소
  - 4) 운전면허증 또는 세금 조회 번호
  - 5) 생년월일 (비사업자 고객)
  - 6) 연락할 전화 번호
  - 7) 신청인의 건물 소유자, 관리인 또는 거주자 여부
  - 8) 예치금 관련 정보
  - 9) 지역이 청구하는 요금, 수수료와 비용 지불을 책임질 주 신청인의 서명
- (e) 모든 서비스 라인은 지역 기준 세부사항에 의거해 설치된다.
- (f) 서비스 주소가 은행 소유인 경우,

은행 또는 건물 매매를 대표하도록 은행과 계약한 자가 ‘은행 소유 주택용 수도 서비스 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예치금은 자기앞 수표, 현금, 신용카드 또는 우편환으로 사전에 지불해야 한다. 신규 서비스에 대한 ‘수도 서비스 유지 계약’은 다음을 포함해 지역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며 국장이 승인하는 정보로 뒷받침된다:

- 1) 제공할 건물의 지도 또는 법적 설명서
- 2) 청구 성명, 회사명, 연락 성명
- 3) 연락할 전화 번호
- 4) 청구에 사용될 우편 주소
- 5) 서비스가 시작될 영업일
- 6) 지역이 청구하는 요금, 수수료와 비용 지불을 책임질 신청인의 서명

### 제3조. 지역 시설의 연장 및 확장

(a) 제2조 (b) 및 (c)의 조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설의 설계, 크기, 유형과 위치는 시설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체 넓이의 향후 지대 사용 및 수도 요건, 그리고 루프식 주관이 다중 수원과 물을 사용처로 옮길 다중 경로를 제공할 능력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 지역에서 단독적으로, 그리고 확정적으로 판단한다. 주관은 자치구 또는 도시에서 요구하는 경우

새로운 가로포장의 끝으로 연장될 수 있다.

(b) 지역 시설의 모든 연장 및 확장은 공사 시작 전 지역 국장 또는 엔지니어의 서면 동의가 이루어진 계획 및 세부사항에 의거하여 공사되어야 한다.

제4조. 지역의 책임 제외

지역은 적절한 수량계 수압 하에 고객에게 적절한 지속적이고 충분한 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관리 및 주의를 다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은 신의 뜻, 불가피한 사고, 방해, 지역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의 모든 조건, 또는 지역 시설의 수리, 유지, 변경 또는 연장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건으로 인한 수도 서비스의 부족, 불충분, 연기 또는 중지, 또는 수압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모든 사람의 손실, 피해 또는 불편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 제공된 수도에 대한 고객의 책임

지역에서 제공한 수도의 소유권, 손실의 위험, 이동, 취급, 저장, 폐기, 및 사용에 대한 책임은 지역 수량계의 배출구, 소화전의 조절 밸브 또는 역류 방지 밸브의 배출구에서 지역으로부터 전가된다.

제6조. 시설의 사용 및 파손 금지

a) 각 고객은 지역에서 수도 서비스를 신청 또는 제공받음으로써 지역 및

승인된 직원 및 대리인이 합리적인 시간에 고객의 사유지에 들어가 고객의 사유지 내부 또는 근처에 있는 지역 수량계, 밸브, 역류 방지 장치와 기타 지역 시설을 판독, 조사, 검사, 확인, 수리, 유지 또는 교체할 취소불능한 자격을 부여한다.

b) 방해물로 인해 고객의 사유지 내부 또는 근처에 있는 수량계 또는 기타 지역 시설을 편리하게 판독 또는 서비스할 수 없는 경우, 지역은 해당 건물 또는 청구 주소에 서면 통지를 전송해 10일 이상의 명시된 기한 이내에 방해물을 제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고객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역은 방해물을 제거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과 경비는 간접비용을 포함하여 고객에게 청구될 수 있다.

#### 제7조. 서비스 중단

지역은 시스템 유지, 수리 및 변경의 목적으로 언제든지 수도 공급을 중단할 권한을 보유한다. 가능하면 영향받는 모든 수도 사용자에게 중단에 관한 사전 통지가 이루어진다.

#### 제8조. 지역에 의한 서비스 단절

(a) 단절 사유 지역은 다음의 사유에 따라 모든 서비스 라인 또는 수도 배급 시스템에 대한 기타 연결을 단절하고 수도 서비스를 종료할 권한을 보유한다: 지역, 주 또는 자치구의 보건 담당자가 고객 또는 지역의 수도 사용자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조건을 발견한 경우

(1) 고객이 지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2) 올바른 신청 없이, 또는 거짓이나 사기성 신청 아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경우
- (3) 고객이 지역 시설을 불법적으로 조작하거나 방해한 증거가 있는 경우
- (4) 조사 결과,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캘리포니아 수자원 본부, 또는 자치구에서 연결을 통해 제공되는 물이 버려지거나 그 사용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발견하는 경우
- (5) 고객이 지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량계를 편리하게 판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
- (6) 고객이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역에 지불해야 하는 요금 또는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b) 단절 시기

- (1) 건강 또는 안전 위협을 제거 또는 방지하기 위해 단절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다.
- (2) 양도 계약을 하지 않은 거주지 고객의 경우, 서비스 단절이 7일 이상 남은 시점에서 지역이 전화 또는 우편으로 단절 예고와 그 사유를 사전 통지한다.

- (3) 양도 계약을 한 거주지 고객 중 계약을 준수하지 않거나 현재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 건물에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단절을 예고하는 최종 통지서가 공지된 날로부터 영업일 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서비스가 단절될 수 있다.

(c) 단절 통지 언어

- (1) 미납으로 인한 거주지 서비스 단절 통지는 영어, 민법 제1632조에 나열된 언어, 그리고 지역의 서비스 면적에 거주하는 사람 중 최소 10퍼센트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로 이루어진다.

(d) 단절 통지

- (1) 고객은 지역으로부터 미납으로 인한 거주지 서비스 단절에 관한 서면 정책(본 규정)과 대안 지불 일정, 지불 연기, 최소 지불, 미납액에 대한 할부 요청, 그리고 청구서 검토 및 항소 신청 등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선택지를 안내받는다.
- (2) 지불 연체와 단절 예고에 관한 서면 통지는 거주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주지의 고객에게 전송된다. 고객의 주소가 거주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물 주소와 다른 경우, 거주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물의 주소, 즉 “사용자”에게도 통지가 전송된다.

통지서는 명확하고 읽을 수 있는 양식으로 다음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 고객 성명 및 주소
- 연체 금액
- 거주지 서비스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 또는 납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기한
- 연체 금액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위한 절차 설명
- 청구서 검토 및 항소 신청을 위한 절차 설명
- 거주지 서비스 연체 금액 할부를 포함해 고객이 연기, 감액 또는 대안 지불 일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 설명
- 수도 서비스가 단절될 경우 재연결을 요청하는 방법 설명

(3) 고객 또는 거주 중인 성인과 전화로 연락할 수 없고 서면 통지가 배달 불가로 반송된 경우, 거주지를 방문하여 미납으로 인한 거주지 서비스 단절 예고 통지서와 도시 및 공동체의 거주지 서비스 단절 정책 통지서를 남긴다는 선의의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4) 거주 중인 성인이 지역의 항소 양식을 통해 수도 청구서에 항소할 경우, 항소가 대기 중인 기간에는 거주 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는다.



(e) 단절 예외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거주지 수도 서비스를 단절하지 않는다:

- (1) 고객 또는 고객의 임차인이 거주지 서비스 단절은 거주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의 거주자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는 일차진료기관의 증명서를 지역에 제출한다.
- (2) 고객이 도시 및 공동체 수도 시스템의 일반적 청구 주기에 따라 지불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고객의 가구 구성원 중 CalWORKs, CalFresh, 일반부조, Medi-Cal, 보조 소득 보장 / 주 보조 지급 프로그램 또는 여성, 신생아와 어린이를 위한 캘리포니아 특별 보조 영양 프로그램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경우, 또는 고객이 지역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연간 가구 수입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퍼센트 미만이라는 것을 신고하는 경우 고객이 도시 및 공동체 수도 시스템의 일반적 청구 주기에 따라 지불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인정된다.
- (3) 고객이 할부 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 (12개월 이하)
  - 지역의 자체 결정에 따라 대안 지불 일정 또는 감면 지불을 허락할 수 있다.

(f) 수도 서비스 재개

(1) 연간 가구 수입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퍼센트 미만인 거주지 고객의 경우(고객의 가구 구성원 중 CalWORKs, CalFresh, 일반부조, Medi-Cal, 보조 소득 보장 / 주 보조 지급 프로그램 또는 여성, 신생아와 어린이를 위한 캘리포니아 특별 보조 영양 프로그램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경우, 또는 고객이 연간 가구 수입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퍼센트 미만이라는 것을 신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다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일반 운영 시간 중 서비스 재연결 요금은 50달러(\$50)를 초과하지 않으며, 재연결의 실제 비용이 더 적은 경우 이를 초과하지 않는다.
- 운영 시간 이외의 거주지 서비스 재연결의 경우, 요금은 150달러(\$150)로 책정되며, 재연결의 실제 비용이 더 적은 경우 이를 초과하지 않는다.
- 12개월에 한 번씩 연체 요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면제한다.

(g) 임대인과 임차인과 관련한 단절

(1) 지역이 단절 전 임차인이 합법적으로 거주 중이라는 통지를 받으면,

지역은 체납금이 있는 경우 단절로부터 10일 이상 남은 시기에 거주지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선의의 노력을 가한다. 또한 서면 통지는 거주지 사용자에게 연체 계정의 미납금을 지불할 의무 없이 고객이 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청구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안내한다.

- 관계에 관해 통지받은 후, 지역은 단절 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단절을 통지한다.

- (2) 각 거주지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수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거주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사용 가능케 한다.
- (3) 다가구 거주용 건물의 경우, 한 명 이상의 거주지 사용자가 계정의 차후 요금에 책임을 질 합법적 의사와 능력이 있고 수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역의 기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 (4) 연체 계정의 금액을 면제받으려면, 고객이 되는 사용자는 기록상 연체 계정 고객이 현재 또는 과거에 거주지의 임대인,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증명 방법에는 임대 계약, 임대

영수증, 사용자가 건물을 임차 중임을 표시하는 정부 문서와 민법 제1962조에 따라 공개된 정보가 포함된다.

(h) 단절 보고

- (1) 매년 지역 웹사이트에 미납으로 인한 연간 거주지 서비스 단절 건수를 표시하는 보고서가 발행된다.
- (2) 지역 위원회도 보고서를 제공받는다.

제9조. 수도 사용처, 재판매 금지

지역으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고객도 지역에서 제공한 수도를 본인이 서비스 신청서에 명시한 장소 이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락해서는 안 되며, 지역에서 제공한 수도를 재판매해서도 안 된다.

제10조. 전기 접지

지역 시설 또는 그 배관이나 접촉한 금속에 전기 회로가 접지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연결을 하거나 허용하는 사람은 지역 시설 손상과 이로 인한 인적 부상에 책임을 지게 된다.

제11조. 고객 요청으로 인한 서비스 단절

수도 요금에 책임을 지는 고객이 서비스를 단절하려면 ‘수도 계정 폐쇄 요청’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객은 Diablo 수도 지역에서 ‘수도 계정 폐쇄 요청’ 신청서를 접수하고 처리한 첫 영업일에 발생한 요금까지 책임을 진다. 서비스를

단절하기 위한 ‘수도 계정 폐쇄 요청’ 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해 지역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며 국장이 승인하는 정보로 뒷받침된다:

- 1) 단절을 신청하는 영업일
- 2) 계정상 청구 성명
- 3) 서비스를 단절할 주소
- 4) 서비스 단절을 요청하는 사람의 성명
- 5) 연락할 전화 번호
- 6) 서비스 단절을 요청하는 사람의 생년월일
- 7) 서비스 단절을 요청하는 사람의 사회보장번호 마지막 4자리 또는  
운전면허 번호
- 8) 전송처 주소
- 9) 서비스 단절을 요청하는 사람의 서명과 날짜